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73호
의결 년월일	2004. 7. 16 (제113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7. 15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가 2003. 9. 23 개정되어 부천시문화재단법인 업무 소관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(재)부천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 중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 중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함.
(안 제8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중 “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”을 “문화재단업무
소관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변 경 안
<p>제8조(이사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이사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부천시의회 <u>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</u></p> <p>3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이사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부천시의회 <u>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3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